

코로나19 대응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사업 공모요강

□ 개 요

지원목적	-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활성화 -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도민의 생활문화 참여·향유 활성화 기회 제공	공모기간	'21.11.25.(목)~12.2.(목) 18:00까지
		접수기간	'21.11.25.(목)~12.2.(목) 18:00까지
신청자격	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※ 생활문화예술동호회: 아마추어와 비전문가 중심의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동호회	신청방법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을 통한 온라인 접수(우편, 방문접수 불가)
지원분야	공연 / 전시 / 발간(문학, 시각예술 등)	지원규모	단체당 최대 300만원 이내
제출서류	지원신청서(지정서식 다운로드: 재단 홈페이지)		

※ 사업 추진기간: 선정일 ~ 2021. 12. 31.(금)

□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기준

지원신청 부적격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국립·공립(도·시·구·군립)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,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②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③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·종교기관·친교기관 등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④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·개인(관련 법령 및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)
지원금 수혜경력 부적격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2020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에 지원·선정되었으나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미수행 단체 ②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, 성과보고서 제출기한 내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③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, 집행·정산·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문화예술재단에 통보된 단체 ⑤ 제주문화예술재단 2021년도 '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'에 신청한 경우 지원신청 불가 ⑥ 제주특별자치도 '2021 코로나 대응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'에 선정된 단체 지원신청 불가 ⑦ 제주문화예술재단 2021년 예술동호회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·향유 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 지원 신청 불가 (예술동호회 활동지원/청소년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/찾아기는 생활문화 활동 지원/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전문강사 지원) ⑧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'문화예술분야 재난긴급생활지원금'을 받은 단체

관련 규정, 법률 및 지침 위반 행위자	①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구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
	② 성희롱,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(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제7조제5항 2019.12.20.개정)
	③ 「예술인복지법」 제6조의2에 따른 ‘불공정행위의 금지’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개인
	④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
	⑤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단체

□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

사업목적 및 내용 부적격 기준	①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
	②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
	③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
	④ 졸업 작품 및 학위 청구 관련 발표 사업
	⑤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·경연대회·공모사업
	⑥ 참가비(출품료)를 받는 사업
	⑦ 지원금 적립 및 용자 지원 사업
	⑧ 시설의 건립 및 매입, 재건축 사업
	⑨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
예산 부적격 기준	①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
	②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시, 서귀포시 등 지방자치단체 직접 지원 사업

- ※ 위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- ※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기준, 부적격 사업에 해당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 사유를 안내하고 ‘0’ 점 처리하며, 지원 결정 후 발견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합니다.

□ 심의 배제 사항

심의배제 사항	① 지원신청자격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
	② 신청제한사항(부적격 단체,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)에 해당하는 경우
	③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필수 제출 자료가 미비한 경우
	④ 지원신청서의 주최·주관이 명확하지 않거나, 지원신청단체가 주체가 아닌 경우(대규모 행사의 부속 사업 등)

※ 심의배제사항에 해당되거나 감점이 적용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□ 지원분야

분야	세부분야	
공연예술	연주	오카리나, 색소폰, 아코디언, 우쿨렐레, 하모니카, 가야금, 거문고, 해금 등
	무용/댄스	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, 댄리댄스, 라틴댄스, 라인댄스, 커버댄스, B-boy 등
	힙합/락	힙합 또는 락 장르
	밴드	어쿠스틱, 퓨전, 인디 장르의 직장인밴드, 마을밴드 등
	중창/합창	성악, 중창, 합창, 대중가요 등
	연극/뮤지컬	다양한 주제의 연극, 뮤지컬 등
	전통	민요, 판소리 동호회/단체 등
시각예술	미술, 서예, 사진 등 시각예술 전 장르	
문학	시, 소설, 수필, 희곡, 평론 등 문학 전 장르	
다원예술	기존의 예술장르에 속하지 않는 탈장르·복합장르, 비주류 및 독립예술	

□ 지원신청시 유의사항

- ① 지원신청자는 반드시 공모내용을 확인하고 지원
- ② 필수자료 미제출 시 심사 배제처리 됨
- ③ 신청서 제출 이후인 경우에도 마감일 18시 전까지 수정제출 가능
- ④ 지원사업 확정된 자가 중도 사업포기할 경우 차년도 생활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에 지원신청 불가
- ⑤ 지원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변경(총사업비 등) 원칙적으로 불가
- ⑥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주최자, 사업규모, 주요 출연진, 작품 등이 크게 상이한 경우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
- ⑦ 지원신청서에 개인 및 단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,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
- ⑧ 활동경력 증빙상의 단체가 지원신청 단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 불인정

□ 의무사항

의무사항	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보조금 관리 등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
	②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 '제주특별자치도, 제주문화예술재단'의 후원 표기
	③ 추후 사업 수행 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, 만족도 조사, 모니터링 등에 적극 협조

※ 의무사항 미이행시, 추후 재단 지원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□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

구분	상세
임차료	장소 대관료, 음향·조명시설, 악기, 무대의상
제작비	악보, 액자, 무대(세트, 소품), 특수효과
재료비	공연·전시·발간 등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
홍보비	홍보물 인쇄비(SNS홍보비, 촬영비 불가)
사례비	출연료, 사회자 사례비, 기획 사례비, 안무료, 작곡료, 편곡료, 원고료, 행사진행 사례비(보조스텝/1일 인당 69,760원까지 지급가능)
발간비	도서인쇄비, 작품집 발간
기타운영비	미술작품·악기운송비 등
복리후생비	예술인고용보험료(사업자 0.7%에 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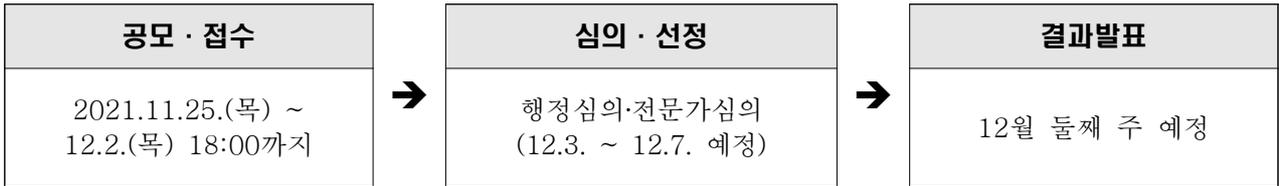
※ 이외에는 지원금 사용 불가(이외 비용은 동호회 자체 자금으로 집행)

※ 지원금으로 이체수수료,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, 원천징수 지연에 따른 가산세 사용 불가

□ 지원금 예산편성시 유의사항

- ①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만 지원(단체의 운영비 불가)
- ② 교부신청 전 집행한 예산에 대해 지원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
- ③ 교부신청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규모 및 내용, 예산을 대폭 변경할 수 없음
- ④ 교부신청시 지원신청 당시의 사례비 총 금액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
- ⑤ 동호회 대표 및 회원에게 사례비 집행 불가
- ⑥ 동호회 대표 및 회원이 사업체 대표인 업체에게 보조금 집행 불가
- ⑦ 사례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경우 사업자(업체)와 거래가 원칙임
- ⑧ 자산취득으로 볼 수 있는 물품 구입 불가(의자, 기성복 등)
- ⑨ 공연/전시 등의 활동내용 촬영에 대한 사례비·제작비 편성 불가(편성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음)
- ⑩ 사례비 단독으로만 예산편성 불가(예시: 300만원 전액 사례비 책정 등)
- ⑪ 강사료 편성 불가(편성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음)
- ⑫ 과제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

□ 심의절차



□ 심의기준

○ 전문가 심의 기준

심의 기준	심의 내용
사업 계획의 구체성/적정성 (40)	신청서와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(20)
	사업 계획의 구체성, 실행가능성(20)
사업예산의 적정성 (40)	신청예산의 타당성(20)
	사업비 구성항목의 적정성(20)
수행역량 (20)	사업 추진 역량(20)
총 점 (100)	

□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사용방법

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온라인접수	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https://www.ncas.or.kr)을 통한 지원신청서 직접 작성 및 지원신청서식(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) 첨부
	② ‘단체 대표자(개인)’ 회원가입 후 ‘단체’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
	③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의 ‘내정보방’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를 신청 시점 기준으로 수정
	④ 2021 코로나 대응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사업은 지원신청, 교부, 정산 전체 과정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으로 수행
사용시 유의사항	① 지원신청 마감 당일은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니 사전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	② 지원시스템 신청 시 지원신청서 미제출, 필수자료 미제출 및 양식 미준수한 경우 심의에서 배제됩니다.
	③ 지원신청서 제출 이후라도 신청 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.

※ 위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문의	시스템 관련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상담센터	1577-8751
	지원사업 관련	제주문화예술재단 일상문화팀	064) 800-9161 064) 800-9162